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설치·운영

1. 임시사무소 설치 이유

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청사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건물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, 위원회 홈페이지에 임시사무소 설치주소·기간·목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
-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(이하 '법') 제10조의2(공정선거지원단)에 따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며,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중에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최대 30명까지 위촉·운영합니다. 이외에도 선거사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선거준비 및 관리 기간에는 사무소 상주 인원 증가로 기존 사무공간만으로는 해당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
- 아울러 법 제176조(사전투표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에 따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·관리를 위한 CCTV·출입통제·방범시스템이 구축된 공간, 선거장비·물품 보관 및 선거사무관계자 교육 장소 등 선거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공간이 증가합니다.

2. 행정망 설치 이유

일부 임시사무소의 경우 직원,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을 설치하며, 이는 선거전용통신망(사전투표통신망, 개표보고통신망)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업무망입니다.